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 범위를 확대하여 근거 기반의 사회보장 제도 분석·평가의 적실성을 높이고,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및 심의 대상 조정 등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범위 확대(안 제20조 및 별표)

- 1)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질병 및 의료기관 이용, 의료급여 중 급여 유형 및 의료기관 이용 등 건강서비스 관련 정보 추가 수집
- 2)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 중 장기요양판정등급, 장기요양인정 신청 여부 등 추가 수집
- 3) 재정지원일자리 사업, 국민취업제도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일자리 지원 관련 정보 추가 수집
- 4) 초·중·고 및 특수학교 재학·졸업 정보(학적정보) 신규 수집
- 5) 퇴직연금·주택임대차계약 등 자료수집 규정 명확화
- 6)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건강정보 수집 근거 신설

나. 사회보장 재정추계 세부지침 수립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, 추계결과의 관계부처 통보 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 (안 제2조)

다. 실무위원회 의결사항 조정 및 위원 구성 변경(안 제11조)

- 1) 실무위원회 의결로써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
(법 제21조제7항)에 ①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,
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추가
- 2) 실무위원회 위원 중 “국무조정실 국무2차장”을 “국무조정실 차장”
으로 변경

라. 재정·통계 전문위원회를 재정 전문위원회, 통계·행정데이터 전문
위원회로 분리 (안 제12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전단 중 “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재정추계”를 “재정추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회의 심의”를 “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보고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 전단 중 “국무2차장”을 “차장”으로 하며, 같은 호 후단 중 “복수차관”을 “복수 차관 또는 차장”으로, “차관으로”를 “차관 또는 차장으로”로 한다.

3.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는 사항

4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

제12조제1항제4호 중 “재정·통계”를 “재정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통계·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

제1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⑥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

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제3호 중 “설정 및 운영”을 “급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·제25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·신고·허가·관리,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

5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중 학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

③ 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별표 1을 별표로 하고, 같은 표(중전의 별표 1) 제1호4)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목 6) 중 “징수”를 “징수,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,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,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,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,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장기요양급여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5)를 6)으로 하며, 같은 목에 5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호 다목1)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목 9)부터 19)까지를 각각 11)부터 21)

까지로 하고, 같은 목 2)부터 8)까지를 각각 3)부터 9)까지로 하며, 같은 목에 2) 및 10)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표 제2호 중 “관한”을 “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”로 한다.

- 4)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·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입자·피부양자의 자격 및 사업장 신고,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및 본인부담상한액,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,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,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보험료 체납, 같은 법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·보수월액·소득월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
- 5)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,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부담(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및 본인부담보상금·본인부담상한액을 포함한다),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,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요양비,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
- 1)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,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의 지원,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의 지급,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

2)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,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

10)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11조에 따른 구인·구직 정보,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 설계 및 개발 상담 등,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,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,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

별표 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안정사업의 가입 및 참여에 관한 정보

나.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 정보

다.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정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영은 2027년 12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사회보장 재정추계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사회보장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재 정추계(財政推計)를 위하여 재 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3월 31 일까지 법 제20조에 따른 사회 <u>보장위원회</u>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 다)의 심의를 거쳐 재정추계 세 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정추계세부지침에는 재 정의 세부범위, 추계방법, 추진 체계, 공표방법·절차 등이 포 함되어야 한다.	제2조(사회보장 재정추계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재정추계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추계 를 실시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재정추계를 하고, 그 결과를 위 <u>원회의 심의</u> 를 거쳐 같은 해 10 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보고 ----- -----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실무위원회 설치 등) ① (생략)	제11조(실무위원회 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서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
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
말한다.

1.·2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③ (생략)

④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
보건복지부장관과 법 제21조제
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
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
되며,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
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기획재정부차관, 교육부차관,
법무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
문화체육관광부차관, 농림축
산식품부차관, 산업통상자원
부차관, 보건복지부차관, 환경
부차관, 고용노동부차관, 여성
가족부차관, 국토교통부차관,
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국
가보훈처 차장. 이 경우 복수
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

②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보
고하도록 정하는 사항

4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
실무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
1. -----

----- 차장 -----
----- 복수
차관 또는 차장-----

관의 장이 지정하는 <u>차관</u>으로 한다.	----- <u>차관 또는 차장으로</u> ---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⑤ ~ ⑧ (생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전문위원회 설치 등) ①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(이하 “전문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2조(전문위원회 설치 등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재정·통계 전문위원회</u> <u><신설></u>	4. <u>재정</u> -----
5. (생략)	5. <u>통계·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</u> <u>회</u>
② ~ ⑦ (생략)	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9조(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) ① ~ ⑤ (생략)	제19조(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 기구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3에 따른 기구로 한다.	⑥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 기구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.
제20조(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) ① 법 제42조제1항제5	제20조(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) ① -----

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자료 또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
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.

1. 2. (생략)

3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
제13조, 제19조 및 제24조에
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,
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
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
정 및 운영에 관한 자료 또는
정보

4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
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
른 부동산정책에 관한 자료
또는 정보

<신 설>

5. ~ 8. (생략)

② (생략)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 규
연-----
--

4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
한 법률」 제24조·제25조에
따른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
대차의 계약·신고·허가·관
리,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
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
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에 관
한 자료 또는 정보

5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5조
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중 학
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
보

6. ~ 9. (현행 제5호부터 제8호
까지와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③ 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 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711